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)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